



명예해양 환경감시원 운영 안내서





Contents **목 차**

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04

2.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임무 08

(참고) 오인사례 09

3.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혜택 12

4. 해양오염신고와 포상금 제도 14

(참고) 해양상식 17

(참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 사례 24



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1.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제도란?

-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해양오염감시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각계·각층의 단체·개인을 위촉·운영하는 제도

명예감시원 연혁

- ▶ '98.4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도입(법적근거 미비) → '06.12월 명칭변경(해양환경지킴이, 약 3천명) → '15.9월 제도 폐지(858명) 운영

* '14년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 후 안전점검 중심 업무 전환,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 참여형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대부분 폐지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 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설(2019.1.8.)

* 해양환경지킴이 폐지 후, 민간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참여 해양환경 감시제도 재운영 요구,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조항 신설

-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정(2021.5.20.)

2. 관련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2019.1.8.]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2019.7.9.]
3. 해양환경관리법 고시 제2021-4호(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2021.5.20.]

3. 자격요건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4.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4-1.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4-2. 법 제9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 4-3.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

4.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1. (위촉) 해양환경단체, 해양전문가 및 자발적 참여 기업·개인 등 신청 또는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위촉 가능(기간3년)

* 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 희망하는 경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서장이 재위촉할 수 있음

2. (해촉)

-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선박, 시설 등에 출입하거나 해양경찰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칭,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
- 명예감시원 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주요임무

1.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6. 교육사항

1.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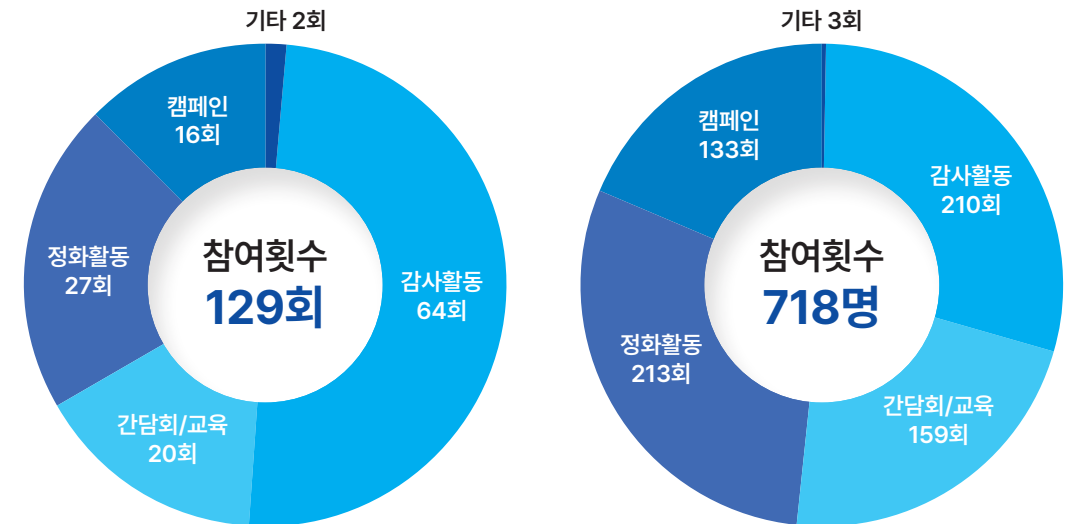
7.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중부청)

* 2025년 11월

1.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계	명예감시원 분류						
	민간단체				연구행정	수협	어업인
	소계	NGO	기업	개인			
292	274	219	38	17	1	3	14

2. 2025년 활동실적



계		감사활동		정화활동		캠페인		간담회		교육		기타활동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29	718	64	210	27	213	16	133	4	21	16	138	2	3

2 명예감시원의 임무

1. 국민 참여 해양오염 감시활동

1. 대상 : 명예감시원 중 참여 희망자

2. 활동시기

(평상시) 일상 생활 중 해양환경 위해요소 발견
(요청시) 해양경찰서에서 합동 감시활동·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3. 해양환경 위해요소

- 선박·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등을 투기할 개연성이 많은 곳
- 블루카본, 양식장 및 수산생물의 서식지로서 오염피해 우려지역
- 항·포구, 해수욕장, 낚시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 기타 기름·폐기물 등을 투기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

4. 절차



5. 신청방법 : 해양환경 위해요소 발견시 관할 해양경찰서 담당자에게 신청

* 해양경찰서 직원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박·시설 단독출입 불가

6. 활동방법 : 해양경찰서 직원과 조를 이루어 해양환경 위해요소(기름·폐기물 방치 등) 확인, 현장상황 고려하여 적의조치

참고

기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

1. 해조류 : 멀리서 봤을 때 검은색·갈색 유막으로 착각하기 쉬움, 근거리에서 육안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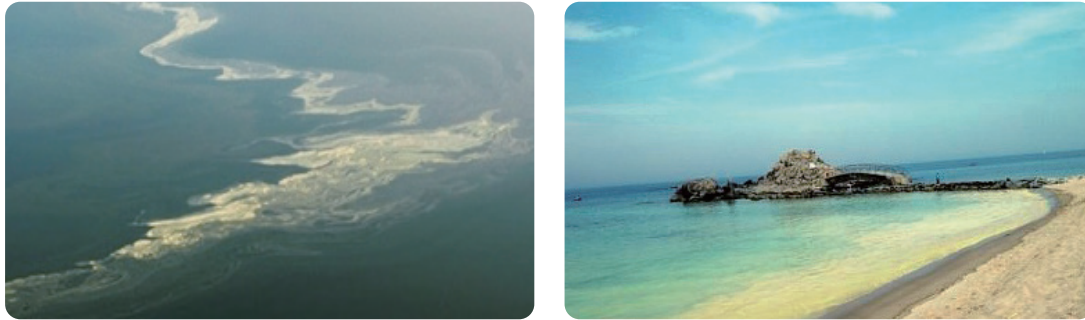
2. 검댕 : 먼거리에서 검은색 유막으로 보이며, 손으로 만졌을 때 가루형태



3. 적조 : 여름철에 수온상승과 영양염류 급증, 특정 플랑크톤의 이상증식으로 해수가 붉은빛을 띠는 현상, 폐수·폐유로 오인되어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4. 송화가루 : 봄철에 주로 나타나며 송화가루를 노란 기름이나 폐수로 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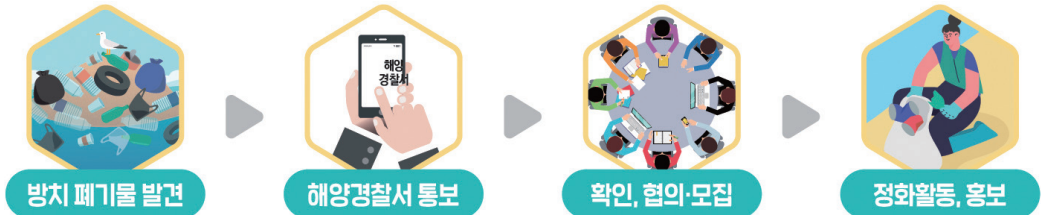
5. 어란 : 가을철에 주로 생기며, 홍합알 등 주변 해산과 색이 달라서 페페인트나 폐수로 오인



6. 기타 : 거품과 부유쓰레기를 관광객, 어민들이 해양오염으로 착각해서 신고하는 경우



2.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1. 명예감시원 해안가, 해역 감시활동 중 방치된 폐기물 발견
2.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해양오염방제과 방치폐기물 통보
3. 해양경찰서 현장 확인, 발생원인 파악, 해당기관 통보 또는 정화운동 일정 협의, 명예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참여자 모집
4. 현장 정화운동 참여, 정화운동 결과 홍보

3.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 명예감시원 지역협의회 또는 수시회의 개최시 평소 감시활동 중 해양환경 관련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해양경찰서에 전달, 반영 건의
- 관할 해경서에서 건의사항에 대해 적정성 검토, 현장조치 및 개선 가능여부 확인하여 조치 사항 설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명예감시원 활동 소식지, 전용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평시 소통을 강화하고 캠페인, 감시활동 등 해양환경보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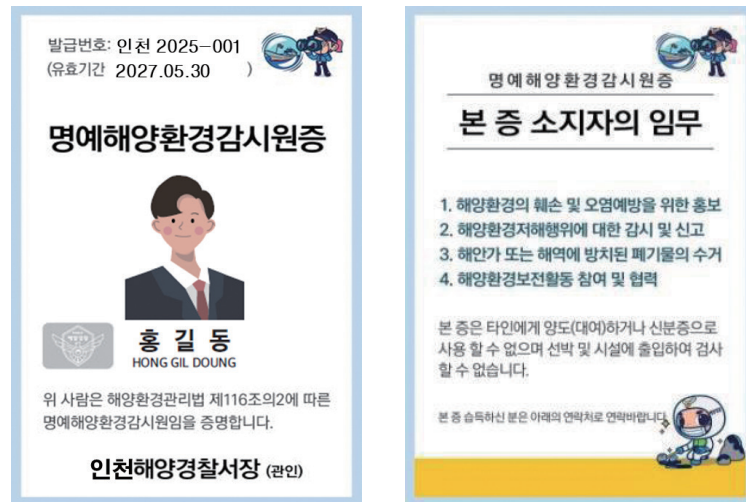
5. 그 밖의 임무

-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 기타 해경서 주관 방제훈련 및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필요시) 등

3 명예감시원의 혜택

1. 사진이 포함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1. 사진이 포함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2. 우수 명예감시원 대상 「올해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선정·포상

1. (우수 명예감시원) 해경서 주관,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 관리

선정 기준

다음 각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연 1회 이상 해양환경을 저해한 행위 등 감시 및 해양오염신고
- ▶ 연 2회 이상 해경서 주관 행사(정화활동, 정담회 등) 참여
- ▶ 연 2회 이상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자체 홍보 및 캠페인 활동(실적 제출)
- ▶ 연 2회 이상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정책제언 및 의견 제시

2. 올해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선발 기준

* 각 항목 합산, 최다 득점자

항 목		배 점	
해양오염 신고		행위자 적발 의법 조치	10점/건
		오염현장을 확인하였으나 행위자 미적발	5점/건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	해경서 주관	수중·연안 정화활동 참여	3점/건
		홍보·캠페인 참여	3점/건
		전문교육(교육원) 참여	2점/건
		간담회 참여(E-mail 등 온라인 제외)	1점/건
	개인 활동	예방 순찰(활동 후 해경서 증빙자료 제출)	5점/건
		수중·연안 정화활동(활동 후 해경서 증빙자료 제출)	2점/건
		정책제언 및 의견제시	
1회 또는 단기간 활용 가능한 내용	3점/건		
업무 참고용	1점/건		

3. 해양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 부여

1. (위촉교육)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원 위촉교육 강화(위촉시)

* (임무) 해양오염예방 대국민 홍보, 오염감시 및 신고, 폐기물수거 등

2. (기본교육) 명예감시원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해경서 주관)

* 해양오염감시, 정화활동 등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3. (전문교육) 교육원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전문화” 과정 개설

전문교육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전문화 과정 참여 유도
■ 기간·장소 1일(연 1회), 중부교육훈련센터(인천) ■ 시기·인원 연초 일정 수립, 명예감시원 약 20명(1회) ■ 주요내용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해양오염예방 정책 등	

4 해양오염신고와 포상금 제도

1. 해양오염신고 절차



- 예시1** 저는 명예감시원 ○○○입니다. 2025년 0월 0일 14:00분 경 ○○항 ○○부두에서 ○○○호가 지나가면서 기름을 배출, 무지개빛 유막 넓게 퍼져있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 예시2** 저는 명예감시원 ○○○입니다. 2025년 0월 0일 14:00분 경 ○○항 ○○부두에 검은색 유막이 10m

“해양오염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1. 지급근거

- ① 「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시행령 제91조의2, 시행규칙 제82조의2
- ②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등의 보상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03호, 2022. 11. 28. 전부개정)

2. 포상금 지급대상

‘22년부터 행위자를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합니다.

(기존) 국민이 해양오염 행위자 특정하여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변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오염상황만 신고해도 추후 행위자 적발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포상금 지급절차





최대 300만원 지급!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횟수제한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금액 최소 5만원~**최대 300만원**
- *오염규모, 물질종류 등에 따라 지급금액 결정
- 지급제외
 - ① 해양오염 행위자
 - ② 직무관련 공무원
 -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방법

- 신고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전화 전국 어디서나 **해양경찰 119**로 신고
- 방문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신고자 본인인증 후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  '22년 7월 준설선 침수
⇒ 포상금 **300만원** 지급
-  '23년 4월 예인선 침수
⇒ 포상금 **50만원** 지급
-  '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
⇒ 포상금 **50만원** 지급

포상금 지급절차

오염신고

신고자
해양오염
특성 및 신고

현장확인/조치

해양경찰서
담당기관
현장확인 및 조치

지급신청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심의/지급

해양경찰서
신고포상금 심의결과
통지 및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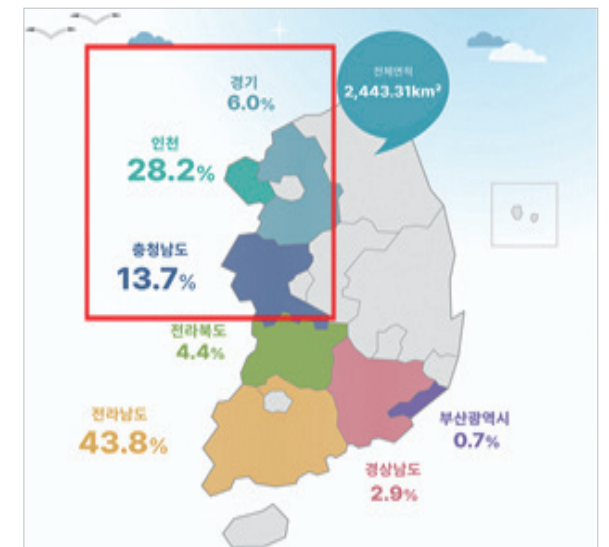
참 고

명예감시원을 위한 해양상식

1. 갯벌

- (정의) 조수가 드러나는 바닷가나 강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 또는 침적토, 바다생물 등의 분해물이 쌓여 노출된 진흙층
- (역할) 어민 삶의 터전, 자연생물 서식지 및 생산지, 오염물질의 정화, 홍수 및 태풍 조절, 자연학습 및 여가 활동의 장 역할
- (해역별 현황) 우리나라 갯벌의 총면적은 2,443km²(국토 면적 대비 2.5%)이며, 중부청 관할 내에는 전국 갯벌의 47.9%(1,172km²) 분포

구분	면적(km ²)	비율(%)
인천	688.63	28.2
경기	147.43	6.0
충청남도	335.71	13.7
전라북도	108.42	4.4
전라남도	1070.79	43.8
경상남도	69.84	2.9
부산	19.01	0.8
경북	0.02	0
울산	0.11	0
강원	0.01	0
제주	3.34	0.1
합계	2,443.31	100.0



구분	주요 갯벌 23개소(파란색: 종합조사 대표갯벌 8개소) *전국: 51개소
인천해역(8)	① 주문/볼음도 ② 강화도 ③ 장봉도 ④ 영종도 ⑤ 무의도 ⑥ 송도 ⑦ 영흥/선재/대부도 ⑧ 대이작/승봉도
경기해역(5)	① 화성 ② 평택 ③ 시흥 ④ 시흥 ⑤ 대부도
충남해역(10)	① 가로림만 ② 원북 ③ 근흥/남면 ④ 안면도 ⑤ 오천 ⑥ 대천천 하구 ⑦ 비인/서천 ⑧ 당진 ⑨ 신두리 ⑩ 보령 소항

* 출처 2023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해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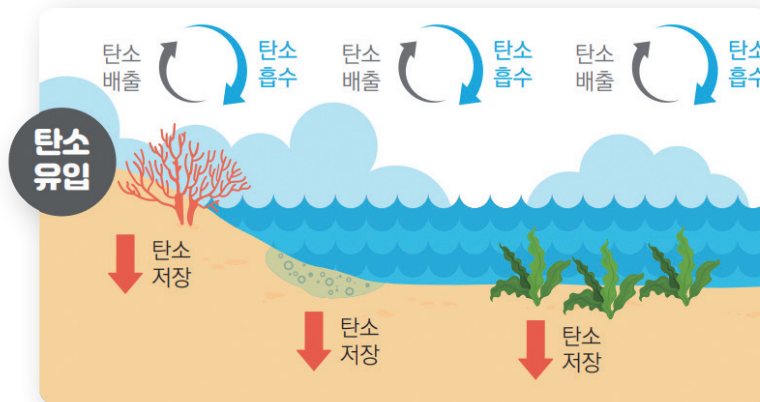
2. 블루카본

1. (정 의) 염생식물, 갈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2. (역 할) 탄소를 포집하거나 격리하고 장기적으로 저장

① 탄소 격리 식물은 매년 많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또는 격리

② 탄소 저장 식물 또는 퇴적물의 탄소를 장기적으로 저장

*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보다 온실 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른 것으로 보고



3.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그 중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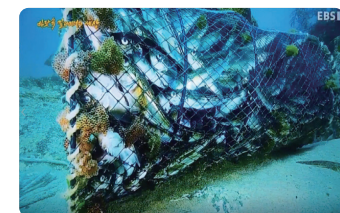
4. 폐어구(유령어업)

1. (폐어구 정의) 국내법에는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며 국제기구에서는 미회수, 유실 또는 폐기된 어구로 정의
2. (발생량) 우리나라 연간 폐어구 발생 총량은 약 4만4천톤 추정, 이 중 약 1만1천톤 수거, 3만3천톤(75%)는 매년 바다에 방치
 - * 자망어업(60~75%), 통발어업(15~33%)이 연간 전체 유실 폐어구의 85~93% 차지, 특히 연안자망에서만 55~70%로 가장 많이 발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2015년)
 - * 전세계 해양쓰레기의 10% 정도가 폐어구 기인(UNEP · FAO 보고서,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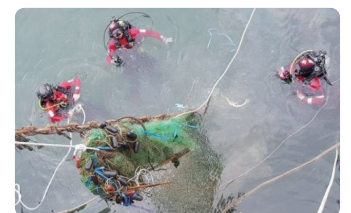
3. 유령어업 등 폐어구로 인한 피해 순환도



부유물 감김사고



유령어업



해양쓰레기

5. 선박 연료유 항함유량 기준

(해경의 역할)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3월 선박 연료유 항함유량 집중 점검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 국민건강 보호

항해구역	경유	중유	배출규제 해역 (인천, 평택, 부산신항, 울산, 광양·여수)
국내항해	0.05%	0.5%	(국내) 경유 0.05%, 중유 0.1% (국제) 경유·중유 0.1%
국제항해	0.5%		* 선박에 연료유 전환 절차서 비치 * 단 황산화물 배출가스 정화장치(스크러버) 설치 선박은 제외

6. 선저폐수

-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18호]
* 선박 기관실 하부에 유입된 해수와 선박 내 누유된 기름이 섞인 혼합물

(초반) 초반 무지갯빛 유막에서 검은색 유막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
(중·후반) 중·후반 증발, 침수, 에멀전 형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항·포구, 해수욕장 등에서 선저폐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119) 해주세요!!

7.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5톤 이상선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사항	비고
0.03% 이상 0.08% 미만	1년이하의 징역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 이상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 해기사 면허 취소

8. 폐기물 배출 방법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선박 발생폐기물 처리기준

	영해기선 3해리 이내	3해리~12해리	12해리~25해리	25해리 이상
폐기물	모든 플라스틱제품 (합성포드, 합성어망, 쓰레기봉투, 목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 조각제)	배출불가	배출불가	배출불가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배출불가	배출불가	배출불가
	납, 카드뮴 수는 욱기크를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 이상 포함된 쓰레기	배출불가	배출불가	배출불가
화물 잔류물	부유성 화물잔류물	배출불가	배출불가	배출가능
	침강성 화물잔류물	배출불가	배출가능	배출가능
	화물창 세정수	배출불가	배출불가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밀폐용기 사용시 배출 가능
음식물 찌꺼기	미분쇄	배출불가	배출불가	배출가능
	분쇄·연마	배출불가	배출불가	크기 25mm 이하시 배출 가능
분노	미분쇄	배출불가	배출불가	항속 4노트 이상시 배출 가능
	분노마쇄소독장치	배출불가	배출불가	항속 4노트 이상시 배출 가능
	분노처리장치	배출 가능	배출 가능	국내항해 400톤 미만 선박은 가능 (단,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항만·어항구역 등은 불가)
중수	거주구역의 목욕, 세탁, 설거지 등 중수 (화장실 및 화물구역 오수 제외)	배출 가능	배출 가능	배출 가능 (단,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등은 불가)
수산동식물	어업활동 중 혼획·유입된 수산동식물 또는 자연기원물질	배출 가능	배출 가능	배출 가능 (단, 연허 또는 허가를 통한 자에 한하여 어업활동 수면)

9. 적조현상

- (정의) 식물성 플랑크톤(조류)의 대량 번식으로 해수의 색이 적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변하는 자연 현상

➔ 적조로 인한 피해 다발로 최근에는 유해조류 대량 번식의 의미로 사용
* (참고) 강, 호수 등 담수에서 발생하는 변색 현상은 녹조로 칭함



(참고) 7~10월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는 이유



높은 수온 등 적조생물의 성장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



적조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필요한 풍부한 일조량



장마로 육지의 영양염류가 연안에 대량 유입

- (해경의 역할) 적조 발생대비 사전훈련, 적조 예찰, 방제지원 수행

9. 기름의 정의와 특성

- (정의) 기름은 자동차나 선박 연료, 난방용 연료, 각종 공업용 원료 등에 사용되며,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
- (휘발성) 기름에 함유된 방향족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경질성 물질은 공기중에 노출 시 24~48시간 동안 대부분 증발 이때 유해가스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필요
- (화재·폭발) 휘발성이 큰 성분이 증발하면서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음
- (호흡곤란·어지러움) 공기중에 노출시 기름에 함유된 휘발성 방향족화합물(벤젠, 톨루엔 등)이 빠르게 증발하며, 호흡곤란·어지러움·구토 등 인체 피해
- (피부질환) 피부 접촉시 모공·땀샘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

10. 기름의 종류별 특성

구 분	해상유출시 특성	사 진
원유	(정의) 지하에서 뽑아낸, 정제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기름, 적갈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점도가 높은 유상물질로 황, 질소 등 화합물이 섞인 혼합물 - 유출시 30~40% 증발하나, 부피가 2~3배 증가 - 유출후 기름의 온도강하로 점도·비중 증가	
휘발성 기름	(정의) 휘발유, 항공유, 등유, 납사 등 - 해상유출 후 1시간 이내 대부분 증발·소멸 - 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사고 우려	
경유	(정의) 원유를 증류시 등유 다음으로 250~350°C 사이에서 얻는 기름, 내연기관의 연료 - 파도가 있는 맑은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 확산 소멸 * 동절기, 저기압·안개해역에서는 3~4일 잔존 가능	
벙커 A유	(정의) 중유와 경유 3:7로 혼합 - 유출 후 빠르게 에멀전화, 부피 3배 이상 팽창 (夏) 쉽게 확산·소멸, (冬) 기온↓ 점도↑ → 지속	
벙커 B, C유	(정의) 벙커-B 중유:경유(7:3), 벙커-C 경유 비율 27% 이하 - 해양오염 장기간 지속, 방제작업 필수 (夏) 에멀전 점도 증가, (冬) 기온↓ → 고형화	
저유황유	(정의) 연료유 황 함유량(3.5%→0.5%) - 고유황유에 비해 황산물 대폭 감축, 고가 - 벙커C에 비해 확산속도가 느리고, 쉽게 고형화	

참 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 사례

1. 취약 항·포구 합동순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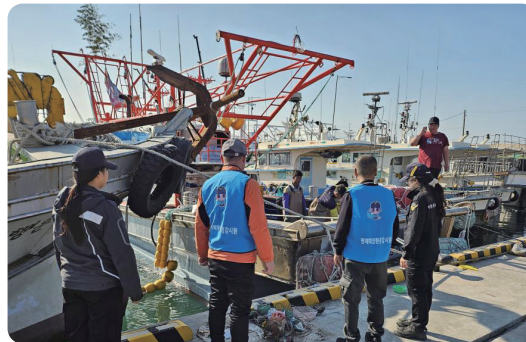
(평택) 해양오염예방 해상순찰



(태안) 명예감시원 해안순찰



(태안) 해경-명예감시원 합동순찰



(태안) 해경-명예감시원 합동순찰



(보령) 해경-명예감시원 합동순찰



(보령) 항내 전복선박 신고

2. 해상·해안 부유쓰레기 수거·정화활동



(인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평택) 바다의날 기념 연안정화활동



(평택) 해상 부유물 수거



(평택)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집중정화활동



(태안) 국제 연안정화의날 기념 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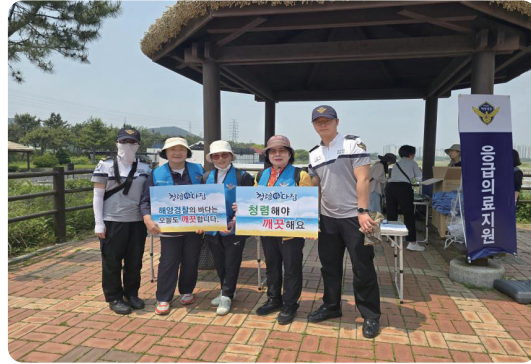


(보령) 명예감시원 주관 연안정화 활동

3. 해양환경보전 홍보·캠페인 참여



(인천) 블루카본 알리기 캠페인



(인천) 청림대야 캠페인



(인천) 소래습지 염생식물 파종



(인천) 소래습지 염생식물 식재활동



(평택)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참여



(태안) 푸른바다 약속 챌린지

4. 교육·간담회 및 방제훈련 참여



(인천·평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전문교육



(태안·보령)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전문교육



(태안·보령) 광역방제지원센터 견학



(인천) 해안방제훈련 참여



(인천) 해안방제훈련 참여



(태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간담회

명예해양 환경감시원 운영 안내서

